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2. 9 선고 2021가단3273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
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, 이슬비

피 고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

변 론 종 결 2022. 1. 19.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은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의 소유였다가, 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2020. 12. 27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 1/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, 5,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1994년 망인의 모친이 사망한 후 농아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망인을 돌보기 위하여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인 모친의 주택을 팔아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피고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을 거주하도록 하면서 보살핀 것으로서, 사실상 형제자매 5인의 공유재산이며 결국 상속지분만큼의 매매대금(당시 매매대금 3,500만 원의 1/5인 700만 원)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우희

부동산의 표시

1. 강원도 강릉시 담3471㎡2. 강원도 강릉시 전5363. 강원도 강릉시 대215㎡

4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강원 강릉시 아파트 동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3동

1층 500.76㎡

2층 496.8㎡

3층 496.8㎡

4층 496.8㎡

5층 496.8㎡

지하 496.24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강원도 강릉시 대 407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4.28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 대지권 4077분의 33.32

(이 상)

